

##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정찬미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아동수당제도는 서구 복지국가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이다(ILO, 2014). 1927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고,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에서 2차 대전 후 1950년대까지 도입되어,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 하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진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다. 아동수당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그러나 정부는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방식에 있어 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의 두 가지 방향을 놓고 보육료 지원을 선택하였고, 아동수당은 정책 아젠다 밖으로 밀려났다. 이후 아동수당 도입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논의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다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선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재정형편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실천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저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무상보육이 우선이다.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라고 한발 물러섰다(연합뉴스, 2012, 12, 26). 그 이후 현재 박근

혜 정부 하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는 수면 밑으로 잠수해 버리고 말았다.

한국에서 아동수당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sup>1)</sup>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번에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 실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의 두 가지 대안적 방식을 놓고 우선순위를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도입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의 두 바퀴에 의해 굴러간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제 보편적 보육서비스는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인다. 이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본격화할 때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 중의 하나는 기존에 조세지원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들과의 중복 문제이다. 현재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로서 인적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등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 이들 조세지원제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시 기존 조세체계를 통한 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기존 조세지원제도들을 어떻게 대체 또는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 어떤 소득계층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에서 아동부양가구 소득지원제도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국가사례연구와 시뮬레이션의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국가사례연구 결과로서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의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5장에서는 한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안적 모델들을 설정하고 소득계층 및 가구형태에 따른 급여혜택 변화를 시뮬레이션 해본다. 6장은 결론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8)에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이견(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효과 불투명, 여성의 근로유인을 저하시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저해 우려),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보육료 등 영유아 대상 지원제도와와의 중복 여부, EITC 등 세제지원방식과의 중복 여부), 그리고 재원배분원칙과의 위배 문제(저소득층에 재정역량 집중 필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시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편적 수당 도입 불가피)를 제기하였다.

## II. 선행연구 검토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복지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가 있고, 조세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비환급형 세액공제, 환급성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아동 부양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제도유형 중 하나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제도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 대한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종합적 고려가 부족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수당제도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조세측면의 기존연구도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확대 등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 중 복지측면에서 아동수당에 대해 논의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조애저·김유경, 2000; 이재완·최영선, 2003; 김수정, 2006; 이선주·박선영·김은정, 2006; 심미례, 2004; 최성은·신윤정·김미숙·임완섭, 2009). 보다 구체적으로, 조애저·김유경(2000)은 프랑스, 영국,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6)은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세국가인 핀란드, 일본,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의 변천사 및 특성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으로 보편주의형, 소득연계형, 출산장려형의 세 유형의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심미례(2004)도 저출산시대의 아동관련 소득보장정책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주요국의 아동관련 소득보장정책 현황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절한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아동수당제도 하나만 단편적으로 고려하여,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조세측면에서 아동부양가구 소득지원에 대한 기존연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정지선·여은정, 2007; 이상신·전병욱·허원, 2009; 김완석, 2010; 정유석, 2012; 최보람·문예영, 2012). 정지선·여은정(2007)은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추가공제액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대상 확대, 출산과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주장하였다. 정유석(2012)은 자녀관련 조세지원정책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소득공제 확대보다는 지출의 확대를 유도 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근

로장려세제의 조건완화와 자녀장려세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신·전병욱·허원(2009)은 다자녀 추가공제가 소득공제방식으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경감되어 역진적 효과를 가지므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부양공제액의 현실화, 의료비·교육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최보람·문예영(2012)도 역시 세제지원의 현실적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조세측면에서 아동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로의 전환,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한 연구들로서 조세체계 내에서의 아동의 소득보장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차원에서 아동수당제도와 조세체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정찬미·이상은(2009)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수당과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세 가지 제도를 조합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환급성 세액공제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만 고려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전 미국의 CTC에 기반을 두어 가상적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 현시점의 현실과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소득보장정책으로 아동수당제도,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성 세액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득수준별로 종합적인 급여수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서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제도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른 대안적 모델들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수준별 및 가구형태별 급여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국가사례 연구

국가마다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구체적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동수당에 있어서도 아동수당의 유무 및 아동수당의 보편성 정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조세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소득공제, 비환급형 세액공제, 환급형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이 있다. 국가들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제도형태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형태들을 조합하는가에 따라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구체적 형태는 달라진다. 아동수당은 없지만 아동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소득공제는 없

지만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결합하여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영국, 미국 세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세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세 국가의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형태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표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스웨덴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면서 세액공제를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영국은 소득기준을 두는 준보편적 아동수당제도와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를 결합하는 형태이다. 미국은 아동수당은 없지만 조세지원제도들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표 3-1> 주요국가의 아동의 소득보장 제도 시행 여부

		아동수당 보편성		
		보편적	소득조사기반	아동수당 없음
조세 혜택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	스웨덴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		영국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			미국, 한국

국가사례연구에서는 각 국가에 있어서 먼저 해당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들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본다. 그 다음 각 국가에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급여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본다. 각 국가의 사례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한국과의 비교를 위하여 각 국가의 급여수준을 해당 국가의 평균임금(AW)의 백분율(%)로 평가하고 이를 다시 한국에서의 평균임금의 해당 백분율에 해당되는 원화가치로 환산하여 검토하였다. 각국의 경제적 수준이나 물가수준 등이 다르므로 평균 임금의 %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더욱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 시뮬레이션(Simulation)

한국에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아동수당은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또한 기존의 조세지원정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이슈가 존재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가구에 속한 아동들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준보편적 아동수당의 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두 가지 모델로 설정한다. 첫 번째, 스웨덴 유형으로 보편적 아동수당형이다.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1인당 월10만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월10만원의 금액은 스웨덴의 아동수당 급여액을 평균임금의 비율로 한국에 적용할 경우 9만1천원 수준이고 환율을 적용할 경우 14만6천원 수준이라는 것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sup>2)</sup> 두 번째, 영국 유형으로 소득조사를 통한 준보편적 아동수당형이다. 가구연소득 6,000만원까지 아동1인당 월10만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가구연소득 6,000만원의 기준은 영국의 아동수당의 가구소득기준 £6,000를 평균임금의 비율로 한국에 적용한 금액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수당 급여액은 위와 동일하게 월1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경우 현재 한국에는 인적소득공제,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서 자녀세액공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서 자녀장려세제(CTC)와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다. 이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조세지원제도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 그 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유지할 것인지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도입시 조세지원정책에 관한 다양한 선택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방안을 선택하였다. 첫 번째는 모든 조세지원제도들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근로장려세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는 소득공제 및 비환급형 세액공제의 아동부분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아동수당의 두 가지 형태와 조세지원제도들의 네 가지 대체방식을 조합하여 모두 8가지의 대안 모델들을 설정한다. <표 3-2>는 한국에서 아동수당 도입시 8가지의 대안 모델들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이와 같은 8개 대안모델들을 도입할 경우 현재 한국의 기존 제도에 비교하여 급여혜택의 차이를 시뮬레이션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표준가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와 자녀1인으로 구성되는 3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한다. 그 다음 이 표준가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장소득의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8가지 대안모델들의 적용시 기존 제도에 비교하여 표준가구에서 급여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8가지 대안모델들의 적용시 소득계층별로 어느 소득계층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2)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이 월10만원이기도 했다.

〈표 3-2〉 아동수당 대안모델 설정

아동수당 유형	조세지원제도의 대체방식	모델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성세액공제	
			아동 부분	가구 부분	아동 부분	아동 부분 (CTC)	가구 부분 (EITC)
보편적 아동수당형	전면대체	모델1-1	X	X	X	X	X
	EITC만 유지	모델1-2	X	X	X	X	O
	CTC, EITC 유지	모델1-3	X	X	X	O	O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아동부분만 대체	모델1-4	X	O	X	O	O
준보편적 아동수당형	전면대체	모델2-1	X	X	X	X	X
	EITC만 유지	모델2-2	X	X	X	X	O
	CTC, EITC 유지	모델2-3	X	X	X	O	O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아동부분만 대체	모델2-4	X	O	X	O	O

주: (X: 기존제도 폐지, O: 기존제도 유지)

#### IV.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국가 사례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국가 사례연구로서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각 국가별로 먼저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제도 현황들을 아동수당제도와 조세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의 급여수준을 분석해 본다.

##### 1.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와 조세지원정책으로서의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직업소득공제(Jobbskatteavdraget, JSA)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나 환급형 세액공제 등의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없다.

먼저,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Child allowance and large family supplement)에 대해 살펴보자.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소득

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고, 전일제 학생일 경우 20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가족보조(large family supplement)가 적용된다. <표 4-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1명일 경우 1,050크로나가 지급되며, 아동이 2명일 경우 아동수당 2,100크로나와 대가족보조 150크로나를 합쳐 2,250크로나가 지급된다. 아동수당과 대가족보조 급여액은 모두 비과세로 적용된다(Försäkringskassan, 2015). <표 4-2>는 아동수당 급여액을 평균임금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한국 원화의 가치로 전환한 값을 보여준다. 아동1인의 경우 월 9만1천원으로 연 약109만원에 해당된다.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월 14만6천원으로 연 약175만원에 해당된다.

<표 4-1> 스웨덴 아동수당 급여체계

(단위: SEK, 월)

아동수	아동수당	대가족보조	총합
1	1,050	-	1,050
2	2,100	150	2,250
3	3,150	604	3,754
4	4,200	1,614	5,814
5	5,250	2,864	8,114

자료: Försäkringskassan(2015). Child allowance and large family supplement.

<표 4-2> 스웨덴의 아동수당급여 한국적용

스웨덴 (단위: 크로나) (연평균임금 SEK377,617, OECD 2014)		한국적용 (단위: 원) (연평균임금: 33,226,324원(OECD 2014), 환율: 1크로나=139.7원)		
아동수당				
아동수	아동수당급여(월)	% of wage	임금의 % 적용시	환율적용시
1	12,600 (1,050)	3.3	1,096,464 (91,372)	1,759,086 (146,590)
2	27,000 (2,250)	7.2	2,392,296 (199,358)	3,769,470 (314,122)
3	45,048 (3,754)	12	3,987,156 (332,263)	6,290,547 (524,095)
4	69,768 (5,814)	18.5	6,146,868 (512,239)	9,745,891 (812,157)
5	97,368 (8,114)	25.8	8,572,392 (714,366)	13,593,546 (1,132,795)

다음으로 스웨덴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 직업소득공제(JSA)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JSA는 스웨덴의 EITC제도에 해당되는 제도로서, 실업자들의 노동활동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준다. JSA의 급여체계는 <그림 4-1>에서 제



시된 바와 같다. 이 그림에서 급여액은 평균지방세율 32.1%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졌는데, 지방세율이 높을수록 급여수준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높은 세금을 내는 지방에 JSA를 통한 공제를 많이 해주어 지방간 발생하는 세금 차이를 고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림 4-1〉 스웨덴 Jobbskatteavdraget 급여체계



[자료] <http://www.ekonomifakta.se/Fakta/Skatter/Skatt-pa-arbete/Jobbskatteavdra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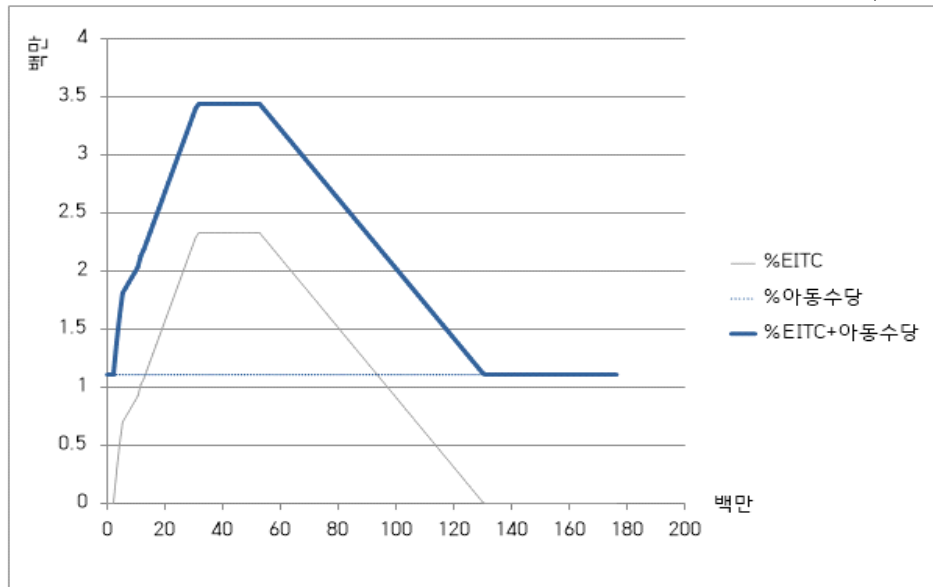
JSA 세액공제는 평균임금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국 원화로 평가할 경우 연가구소득 약 1억 3천만원 소득자까지가 수급대상이 되고, 최대급여액은 연 소득수준 약 3천만원에서 5천2백만원의 사람에 대해서 약 230만원이 지급된다(<그림 4-2> 참조).

스웨덴의 JSA는 영국의 WTC나 미국의 EITC와 성격에 차이가 있다. 영국과 미국의 제도가 환급형 세액공제인데 비해, 스웨덴의 JSA는 비환급형 세액공제이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제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스웨덴의 JSA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스웨덴의 아동수당과 JSA 세액공제제도를 종합하여 소득계층별 급여 수준의 변화를 살펴 보면 <그림 4-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 단위는 평균임금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국에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되었다. 연 가구소득 약 1억 3천만까지는 아동수당과 JSA 세액공제 급여를 함께 지급받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아동수당만 지급받는다. 연 소득 약 3천만원에서 5천2백만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급여액으로 약 340만원을 지급받는다. 즉 스웨덴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는 보편적 아동수당과 함께 중산층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결합시킨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스웨덴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체계  
: 평균임금의 상대비율 기준으로 한국적용

(단위: 원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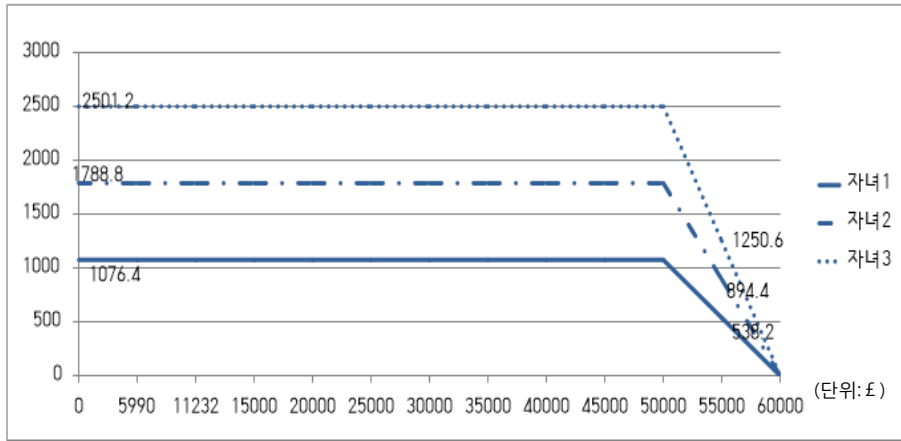
## 2. 영국

영국의 경우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준보편적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정책으로서 환급형 세액공제인 Child Tax Credit(CTC)와 Working Tax Credit(WTC)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원정책에 있어서 인적 소득공제나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는 없다.

먼저, 영국의 아동수당제도(Child benefit)를 살펴보자. 영국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 수급자격에 가구소득 제한을 둔 준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가구소득 £ 50,000를 기준으로 급여액에 차등을 둔다. 연가구소득이 £ 50,000이하 일 경우에는 첫째아동에 대해 £ 20.70(주당)가 지급되고, 둘째아동부터에 대해서는 £ 13.70(주당)씩 추가 지급된다. 연가구소득이 £ 50,00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소득의 £ 100마다 아동수당의 1%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그래서 연가구소득이 £ 60,000가 되면 아동수당의 100%가 세금으로 부과되어 아동수당 급여가 없어지게 된다.

영국의 아동급여를 평균임금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국 원화 가치로 전환하여 살펴보면(<그림 4-4> 참조), 연가구소득 £ 60,000는 6,200만원(환율적용시 약 1억원)에 해당된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연소득 약 6,200만원 미만의 아동들이 아동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동급여액은 약 110만원에 해당된다.

〈그림 4-3〉 영국의 아동수당 급여체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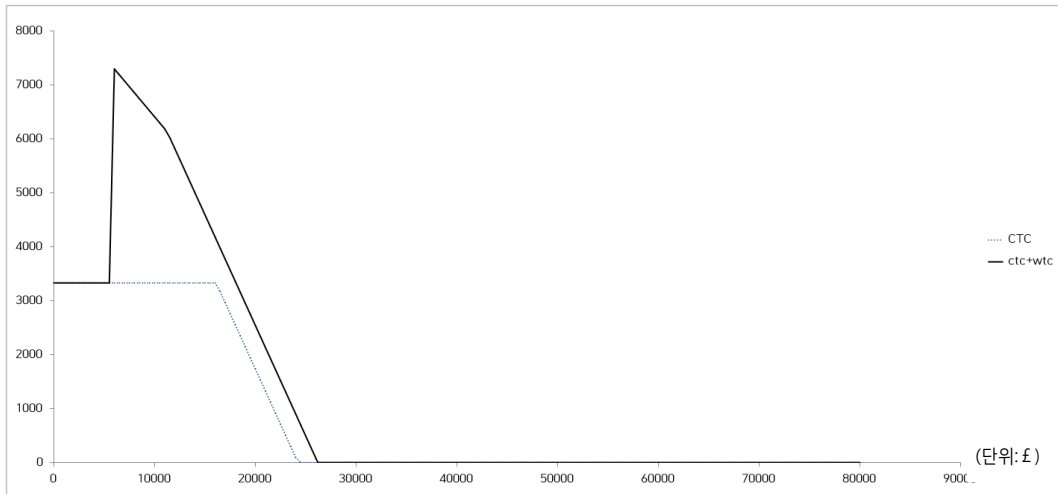
다음으로 영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인 CTC와 WTC에 대해 살펴보자. CTC는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이다. 부모의 근로 소득이 없더라도 16세미만(정규교육 및 훈련을 받을 경우 19세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CTC 급여를 받을 수 있다. CTC 급여산정요소로는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장애여부 등이 있으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CTC 급여가 결정된다. CTC 연간 최고급여액은 자녀1인 £3,330, 자녀2인 £6,110, 자녀3인 £8,890이다. 가구연소득 £16,105까지는 최대급여액이 지급되며 £16,105를 초과할 경우 41%의 점감률이 적용된다.

WTC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이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의 유무, 근로여부, 근로시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근로시간 요건 및 급여산정에서 추가적인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는 최소 주당 16시간을 그리고 아동 부양하는 양부모의 경우에는 최소 주당 24시간을 근로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동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CTC와 WTC를 합하여 연 £7,300의 최대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아동수당과 환급형 세액공제인 CTC 및 WTC를 종합하여 소득계층별 급여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 단위는 평균임금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국에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되었다.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의 수급기준 소득 수준을 보면, CTC는 약 2,400만원, 그리고 CTC와 WTC가 함께 적용될 경우 2,658만원, 그리고 아동수당은 연 가구소득 6,2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최대급여액을 보면, 우선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로서, 아동수당과 CTC를 합하여 약440만원(환율 적용시 약7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을 부양하는 저소득 근로가구가 추가적으로 받을 있는 WTC를 아동수당과 CTC에 더하면, 아동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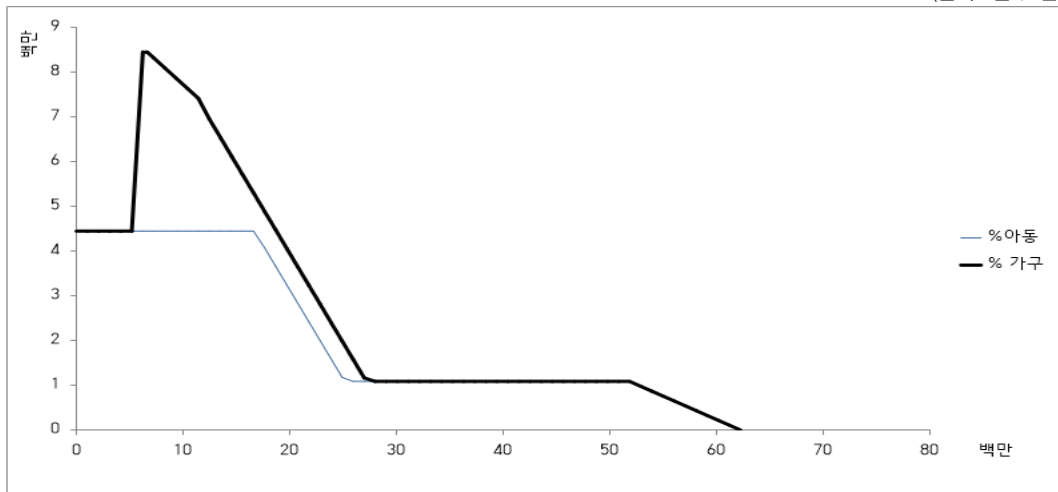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연 최대급여액은 약840만원(환율 적용시 약 1400만원)에 해당된다. 종합해 보면, 영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CTC와 WTC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에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어 고소득층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4-4〉 영국의 CTC와 WTC+CTC 급여체계 (자녀1인)



〈그림 4-5〉 영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체계 : 평균임금의 상대비율 기준으로 한국적용

(단위: 원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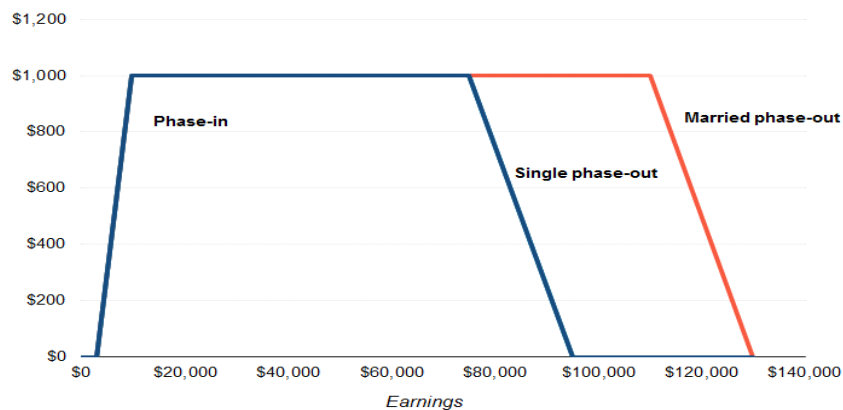
### 3. 미국

미국의 경우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아동수당이 없이 조세지원정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조세지원정책으로는 인적소득공제로서 피부양가족공제(Dependency Exemption), 비환급형 세액공제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환급형 세액공제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가 있다.

피부양가족공제제도는 가족구성원 1인당 최대 \$4,000(2015년 기준)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그래서 3인가구의 경우 최대 \$12,00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한국의 인적공제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수준에 따라 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309,900(2015년 기준)까지는 최대 소득공제액의 적용을 받으나, 그 이상의 총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매 \$2,500마다 2%씩 공제액이 감소되어 \$432,400를 초과하게 되면 공제액이 0이 되어 인적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https://www.irs.gov/publications>).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한 정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초고소득층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CTC)는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서 17세 미만 아동 1명당 \$1,000가 세액공제 된다. 부부합산소득(Married filing jointly)이 \$110,000, 한부모소득(single,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이 \$75,000, 부부개별소득(Married filing separately)이 \$55,000 이하일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00가 공제되나, 이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매\$1,000 마다 \$50씩 공제액이 줄어들게 되어, 부부합산소득 신고 가구의 경우 \$130,000, 부부개별소득 신고 가구의 경우 \$75,000가 되면 급여가 중단된다(<http://taxes.about.com/childtaxcredit.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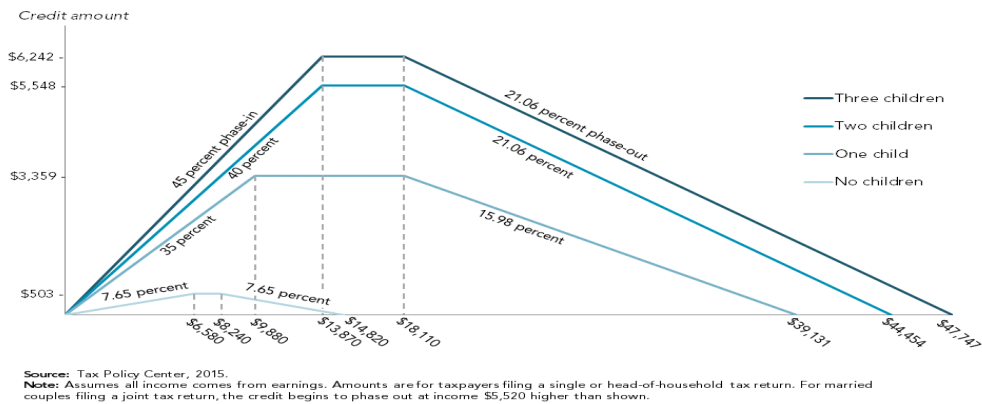
〈그림 4-6〉 미국의 CTC 급여체계(2015년)



Source: Tax Policy Center.  
 Note: Assumes all income comes from earning and child is under 17 and meets all tests to be a CTC qualifying child.

EITC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서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림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수에 따라 급여체계가 달라진다. 아동은 19세 미만(학생일 경우 24세미만)이고, 반년이상 미국에 거주하여야 EITC의 적용대상 아동이 된다. EITC의 총소득 기준이 자녀1인은 \$39,131, 자녀2인은 \$44,454, 자녀3인은 \$47,747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소득 기준금액이 늘어나며, EITC 최대급여액도 자녀1인은 \$3,359, 자녀2인은 \$5,548, 자녀3인은 \$6,242로 증가하게 된다(Tax Policy Center, 2015).

<그림 4-7> 미국의 EITC 급여체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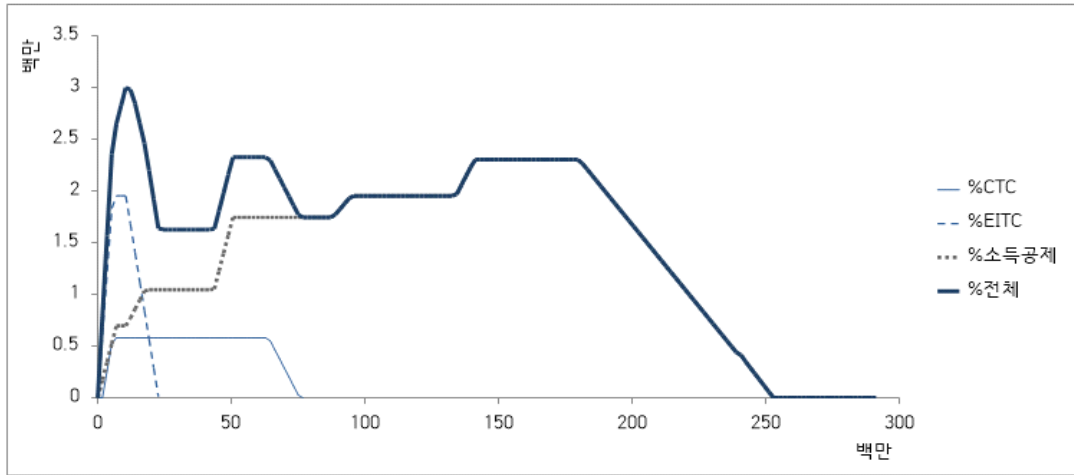
미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들인 피부양가족 소득공제, CTC, 그리고 EITC를 종합하여 소득계층별 급여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8>과 같다. 미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은 중산층 및 상당한 고소득층까지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인적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CTC와 EITC를 통하여 소득을 보충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인적소득공제는 상당한 고소득 계층에까지 조세혜택을 제공하여, 3) 평균임금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국에 적용할 경우, 인적소득공제는 연 가구소득 약 2억 5천만원(환율 적용시 연가구소득 약5억)까지, CTC는 연 가구소득 약7천6백만원까지, 그리고 EITC는 약2천3백만원까지 급여를 제공하였다. 연 가구소득 1억8천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높아지는 역진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CTC와 EITC로 급여를 보충하였지만 소득공제 금액이 커서 전반적인 역진적 형태를 해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대급여액은 가구연소득이 약1억5천만에서 1억8천만일 때 총 급여

3) 모든 소득자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임금(\$57,139, OECD 2014기준)의 7배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연 약 43만불)까지 혜택을 제공받았다.

액이 약 470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 적용시 가구연소득 약3억~약3억5천만원일 때 총급여액 약 940만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그림 4-8〉 미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체계  
: 평균임금의 상대비율 기준으로 한국적용

(단위: 원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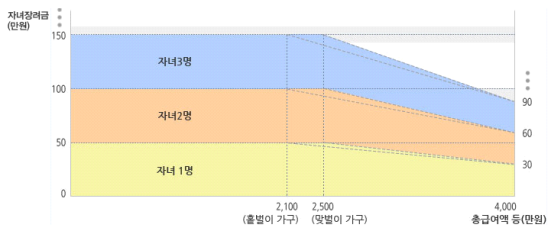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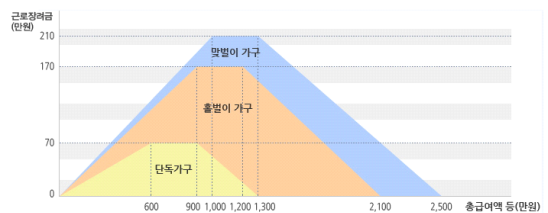


#### 4. 한국

한국의 경우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미국과 같이 아동수당제도 없이 조세지원정책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지원정책으로 인적소득공제, 비환급형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환급형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를 두고 있다. 조세를 통한 지원제도들의 급여구조 및 급여액은 <표 4-3>에서 제시된다. 이 중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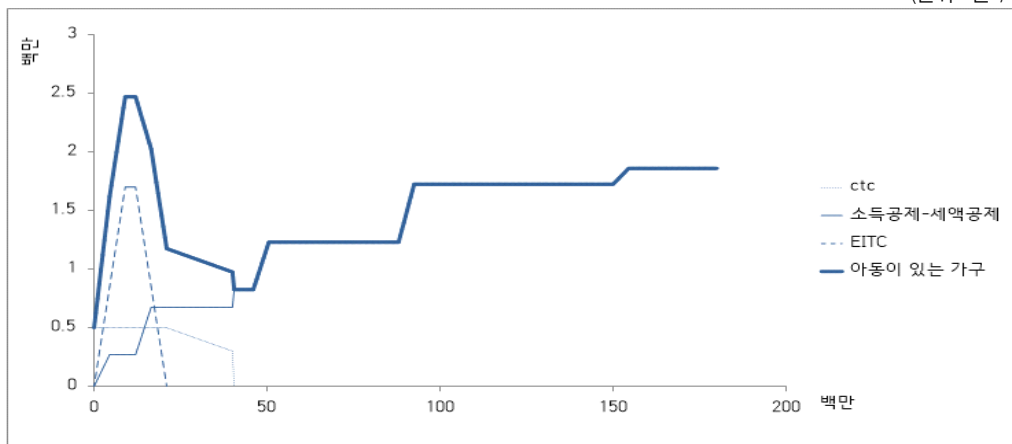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인 인적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그리고 근로장려세제를 종합하여 소득계층별 급여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9>와 같이 나타난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어 자녀장려세제의 소득기준인 연 가구소득 4,000만원까지는 자녀장려세제를 선택하고, 가구소득 4,000만원 이상 아동은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는 인적소득공제로 인해 아주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급여가 중단되는 소득 수준 이후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급여혜택이 상당히 증가된다. 한편,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급여수준이 상당히 보완되었다.

〈표 4-3〉 한국의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유형	항목	급여액
소득공제	인적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1인 15만원 자녀2인 30만원 자녀3인 이상 30만원+ 2인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	6세 이하 2명이상시 둘째부터 15만원
환급형 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자녀1인당 최대급여액 50만원  [자료: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
	근로장려세제	 [자료: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

〈그림 4-9〉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체계  
: 평균임금의 상대비율 기준으로 한국적용

(단위: 원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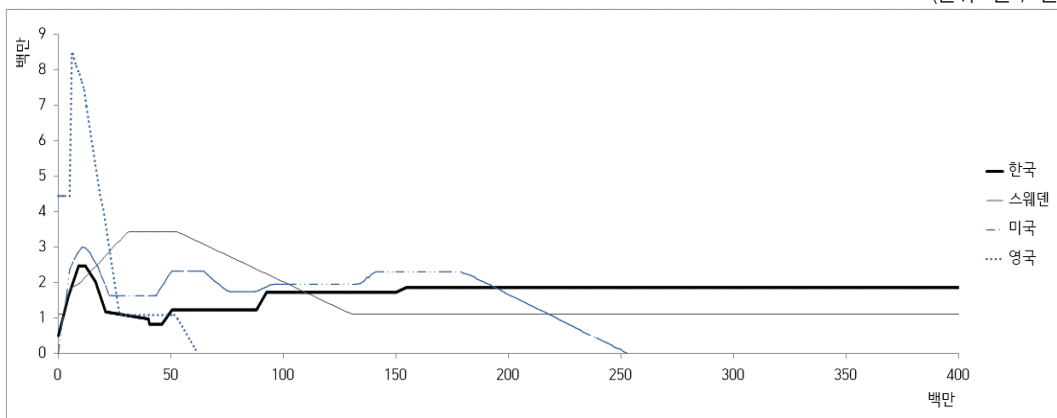


### 5. 국가 간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의 비교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국가별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그림 4-10>과 같다. 각 국가들은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에 있어서 뚜렷한 특징들을 가진다.

<그림 4-10> 주요국과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체계  
: 평균임금의 상대비율 기준으로 한국적용

(단위: 원 / 년)



스웨덴의 경우, 중산층 중심의 아동부양가구 소득보장 급여체계가 뚜렷하다. 보편적인 아동수당에 기반하여 중산층 중심의 JSA 세액공제제도를 결합하여 보편적이면서도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강력한 재분배적 급여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저소득 아동부양가구에 대해서는 CTC와 WTC를 통해 높은 급여수준을 제공하는 한편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중산층까지로만 제한하고 고소득층을 배제함으로써, 강력한 재분배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역진적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없이 인적소득공제제도가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지원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어서, 중상층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조세지원 혜택이 증가하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EITC와 CTC를 통해 혜택을 강화하고, 또한 초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적소득공제를 중단함으로써 역진성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역진성이 강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위에서 살펴본 세 국가 중에서 미국에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아동수당제도가 없이 인적소득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지원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인적소득공

제에 있어 미국과 달리 초고소득층에 대한 급여 제한 및 중단 조치가 없다. 그나마 최근 10년간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및 확대 개편과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미국에 유사한 체계를 형성해 놓은 것이 성과이다.

한편, 급여수준을 보면, 한국은 세 국가에 비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낮다. 영국은 저소득층의 급여수준이 아주 높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도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다. 미국은 고소득층(초고소득은 제외)의 급여수준이 높다. 스웨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이 가장 높는데 특히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영국이나 미국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은 이 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수준도 낮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낮은 편이며,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급여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스웨덴이 가장 적절성이 높고, 한국은 가장 적절성이 낮다.

스웨덴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급여체계는 보충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스웨덴의 급여체계나 급여수준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제도적 장치들이 가장 간결한 제도체계를 가지고 있다. 복잡한 조세지원제도들이 없이 아동수당과 JSA 두 개의 제도로 가장 간결한 제도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유인 측면에서도 스웨덴 제도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증가 구조가 거의 중산층 소득수준까지 지속됨으로써 강력한 근로유인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JSA 급여가 점감하는 구간에 해당되는 중상층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급여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져 이들 계층의 근로비유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서 발생하는 근로비유인의 문제를 거의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상에서의 국가별 사례연구의 종합적 비교로부터 한국에 두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이제 인적 소득공제 중심의 역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중심의 보편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복잡한 조세지원제도를 아동수당과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보다 간결한 제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근로장려세제를 중산층까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 V. 대안 모델의 simulation 결과

본 장에서는 한국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모델들을 구축하고 급여 수준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대안모델들은 아동수당의 제도적 형태와 조세 지원정책들의 폐지 및 유지 방식에 따라 8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급여혜택에 대한 영향은 가구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그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1>은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세지원정책들의 대체방식에 따라 [모델1-1]부터 [모델1-4]까지의 네 가지 대안들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모델1-1]은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기존의 모든 조세지원제도를 대체한 경우이다. 이 모델의 도입시 급여수준을 기존의 급여수준과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 및 서민층 가구들은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 급여가 없어져서 상당한 급여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8천8백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들도 인적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폐지로 인해 급여 혜택이 상당히 축소된다. 저소득층 및 서민층의 급여가 감소된다는 점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모든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최소한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는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모델1-2]와 [모델1-3]은 각각 근로장려세제만 존속시킨 경우와 근로장려세제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세제도 존속시킨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근로장려세제만 존속시킨 [모델1-2]의 경우 대체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급여수준은 기존과 거의 유사하고, 고소득층에서는 인적소득공제의 폐지로 인해 급여가 감소된다.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자녀장려세제도 존속시킨 [모델1-3]에서는 저소득 및 서민층의 경우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급여가 감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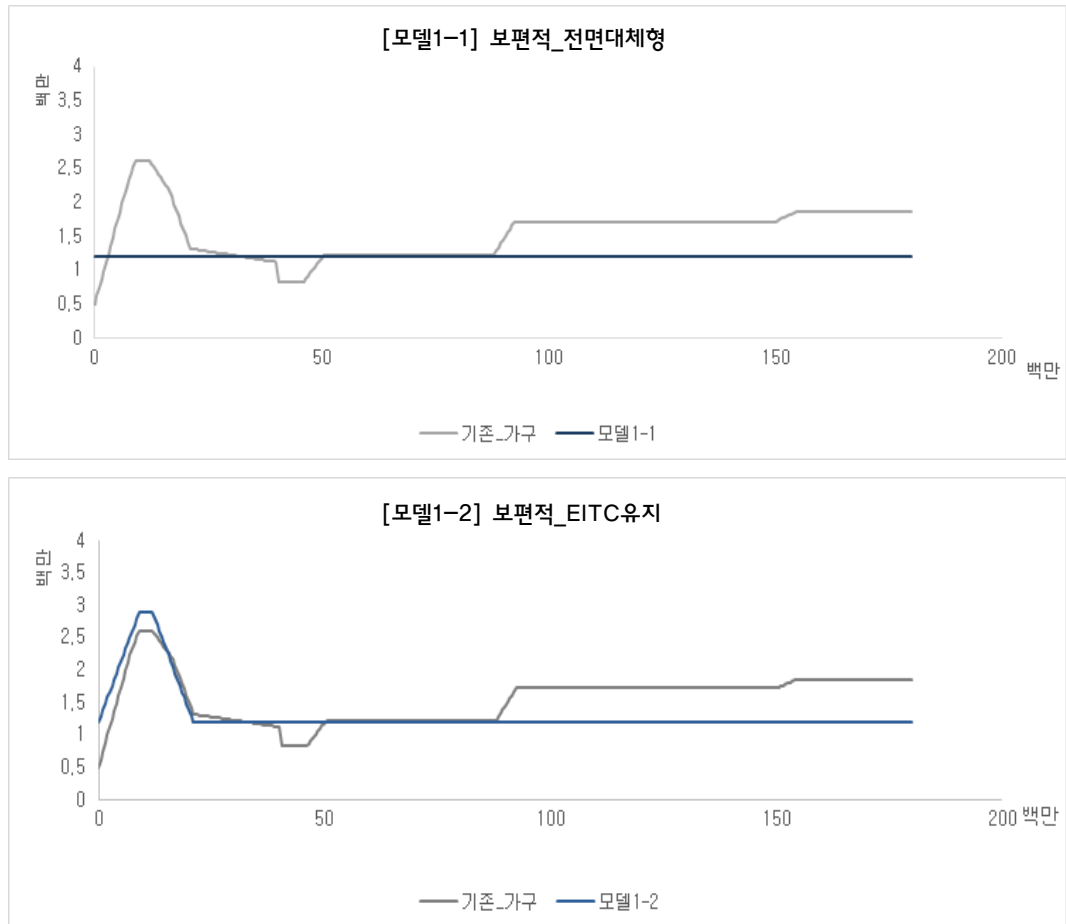
[모델1-4]에서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인적소득공제와 비환급성 세액공제 중 아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체하고 부모에 대한 부분은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급성 세액공제들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전 소득구간에서 기존 급여에 비해 높은 급여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소득공제가 유지된 결과 고소득층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역진적 재분배 체계가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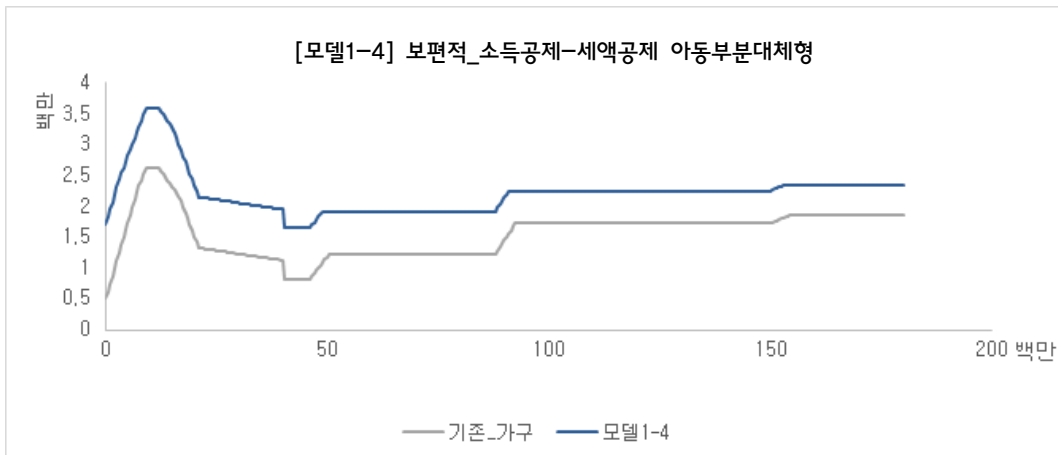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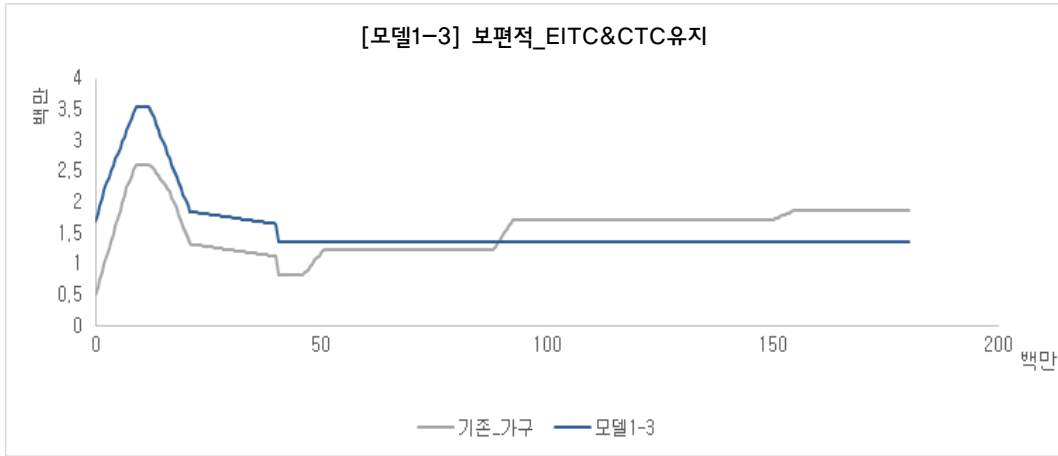
네 가지 모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모델1-4]와 같이 부모에 대한 인적소득공제를 유지하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역진적 재분배 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고소득층에 지금보다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모델1-1]과 같이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까지 없애는 것은 저소득층의 급여를 현재보다 더 삭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모델1-2]와 [모델1-3]처럼 근로장려세제를 남기든지 아니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모두 다 유지하는 것이 보다 나은 모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는 소득조사에 기반하여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의 아동을 수급대상으로 하는 준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지원제도들과 관련하여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급여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아동수당 수급자격 소득기준을 영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연 6천만원으로 설정하였는데, 6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앞의 <그림 5-1>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6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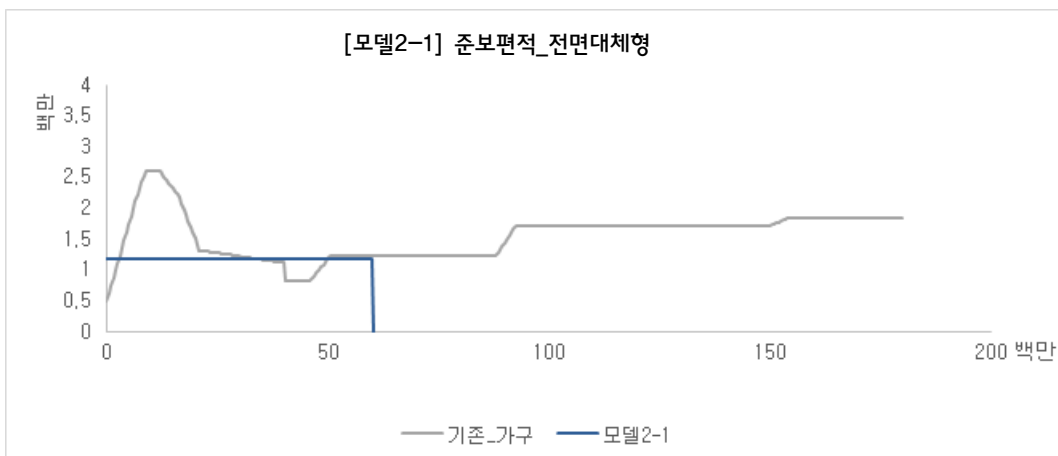
구의 경우에는 [모델2-1], [모델2-2], [모델2-3] 모두에서 아무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경우 고소득층이 중산층에 더해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는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정액급여를 받는 체계가 아니라, 이에서 훨씬 더 나아가 고소득층의 급여를 없애버림으로써, 고소득층 가구의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모델2-4]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남아있어 고소득층이 일정한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고소득층 사이에서 소득이 증가될수록 급여가 증가되는 역진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조사에 기반하여 수급대상을 제한하는 준보편적 아동수당은 수급제한 대상이 아주 소수의 고소득층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상당한 정치적 반발을 야기하여 그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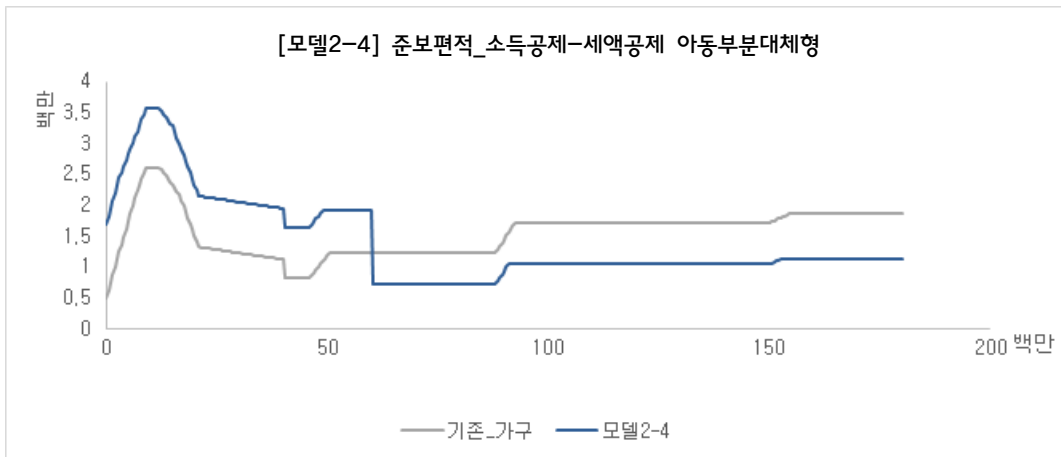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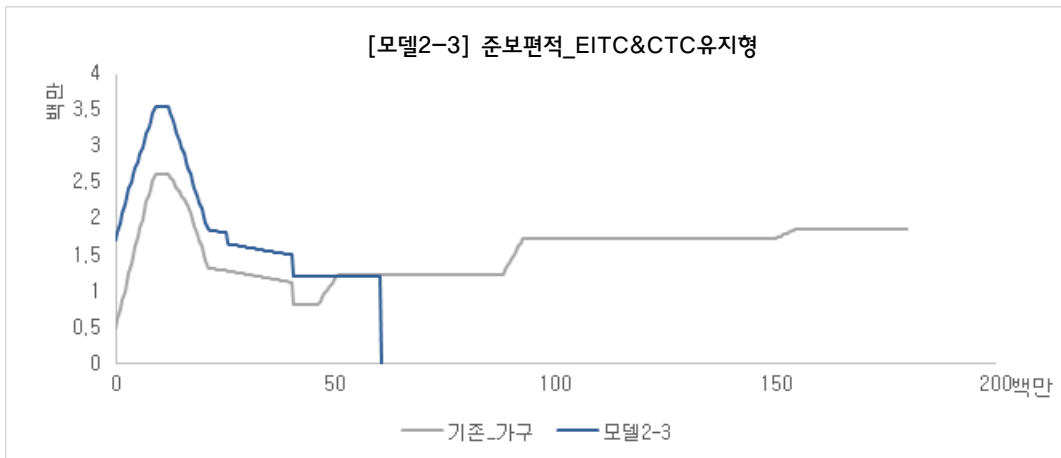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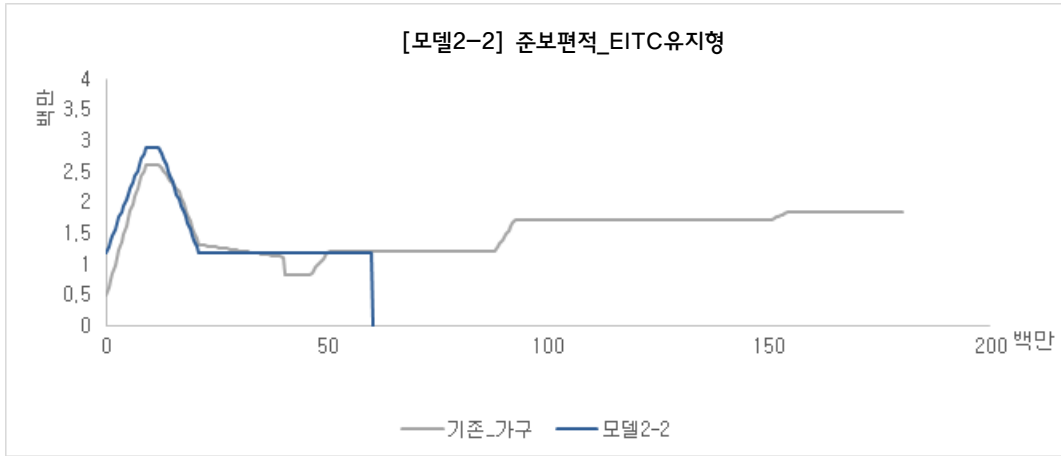
〈그림 5-1〉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시의 대안적 모델들





〈그림 5-2〉준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시의 대안 모델들





## VI.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인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정책의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한 한국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조세지원제도들의 대체 문제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이제 인적소득공제 중심의 역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중심의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적절하다. 한국은 인적소득공제로 인해서 고소득층이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를 소득기준을 설정하여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야기하여 실현가능성이 약하다. 그보다는 고소득층에도 아동수당을 제공하면서 그동안의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조세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주된 수혜대상인 인적소득공제 및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되,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 중에서는 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 및 서민층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이 제도들은 우선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이 근로장려세제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넘어서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체제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수급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하여 빈곤한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도 어렵고 또한 빈곤층을 탈피하게 되면 급여가 급속하게 제거되어 근로비유인을 야기한다. 스웨덴과 같이 중산층 소득수준까지 근로장려세제 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비유인을 강화하고 또한 급여감소 구간도 대폭 확대하여 완만한 급여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근로비유인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김완석. 2009.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50: 393-414.

- 조애저·김유경. 2000.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 PP31-40.
- 이재완·최영선. 2005.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2 : 161-180.
- 이선주·박선영·김은정. 2007.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4 : 167-192.
- 심미래. 2004.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연합뉴스(2012.12.16). 제 18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3차 TV토론 지상중계.  
<http://www.yonhapnews.co.kr/vote2012/2012/12/16/2901190000AKR20121216075300001.HTML>.
- 월간 참여사회 편집팀(2012). [특집] 18대 대선 읽기. 2012년 12월호 p.8~p.15.
- 이상신·전병욱·허원. 2009.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 여성의 출산 후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1차).
- 정유석. 2012.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형태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2: 161-180.
- 정지선·여은정. 2007.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12(3). 137-168.
- 정찬미·이상은. 2009.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사회복지정책』 36-1: 307-327.
- 최보람·문예영. 2012. “출산장려세제의 실효성 검토와 개선방안 -다자녀 추가공제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3: 187-211.
- 최성은·신윤정·김미숙·임완섭.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74.
- Försäkringskassan. 2015. “Child allowance and large family supplement”.
- HM Revenue & Customs, 2016.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 ILO. 2014.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4/15”.
- <Http://www.ekonomifakta.se/Fakta/Skatter/Skatt-pa-arbete/Jobbskatteavdraget/>
- <https://www.irs.gov/publications>
- <http://taxes.about.com/childtaxcredit.htm>
- <https://www.hometax.go.kr>
- <http://www.taxpolicycenter.org>.